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웹 문서 [이미지](#) [뉴스](#) [그룹스](#) [디렉토리](#)

사직서

Google 검색

문 좋은 예

전체 웹 한국어 웹

이런저런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딱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고민되더군요. 말씀만 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직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제출하는지, 사직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등이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과 아래와 같은 '사직서 작성가이드'가 있더군요.

사직서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1) 사직의사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아무 제약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남기거나 확실히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자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 2) 회사에 따라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경우

규정에 의한 무단결근일수가 되면 자동 '해고처리' 되어 그런 경우는 오히려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 안받아도 사직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징계해고라도 급여나 퇴직금은 영향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가?

그 기간은 아무제한이 없습니다. 당일날 내고, 만나와도 되고, 전화로 사직의사표시하고 그만두어도 되며, 서면제출하되 1개월전, 또는 15일전 7일전 3일전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거나 대체선정하여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지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 사직일이 되는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이 사직일인가?

1) 원칙적으로 사직일은 내가 사직서 써서 사직일기재한 날이 사직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직일은 사직서에 사직일기재하여 제출하고나서, 회사에서 사직서 결재권자가 결재한 날, 그날이 바로 사직일이 됩니다.

대체로, 본인이 사직하겠다고 적은 날을 사직일로 결재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만약 나가는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좋지않은 태도를 보인다든지, 회사에 대해 해악을 끼친다든지 끼칠의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보류한 채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는 도대체 언제가 사직일이 되는가?

1) 민법상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힌후에 1임금기가 경과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급여기간이 1개월단위이므로 1임금기는 1개월입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명후 결재를 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후에 사직처리가 됩니다.

2) 따라서, 1개월후 효력발생을 정확히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시작점을 알아야 하고,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는 급여담당자에게 사직원을 직접제출하면 되고, 그날부터 한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받아도 못받은 척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띄워서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편지와 함께 사직서를 보내서 퇴사한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단, 참조할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가급적이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는 곳은 관계없지만, 처리를 미루거나 안해줄 가능성이 보이는 곳은 사직서 처리되었다고 할 때까지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직원 제출하고, 바로 처리 하지 않는 회사에서 출근않으면 처리되는 한달간 급여가 없게 되고, 평균임금이 줄어서 퇴직월의 급여는 물론 퇴직금에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출처 : Hankyoreh Plus 제휴사

일생일대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자유분방하네요. 타당한 사직사유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차 의무적으로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요, 심심한데 사직서나 써야겠습니다.

“ 올 겨울은 여러모로 힘겨운 시기가 될 것 같군요. 힘내야 되는데.... ”